



유기질비료지원사업  
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 
이렇습니다.

## 신청기간 및 장소 등

- ▶ **신청기간** : 2013. 11. 1 ~ 2013. 11. 30 (변경 12.20)
  - ※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▶ **신청장소**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  - 농지가 여러 시·군·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·군·구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  - 농지가 같은 시·군·구내의 2개 이상 읍·면·동에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
  - ※ 신청서 작성시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농협을 반드시 지정
- ▶ **공급시기** : 2014. 1월 ~
  - ※ 농가신청서에 기재한 공급 희망시기에 배송

## 제출서류

- ▶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: 읍·면·동에 비치

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.



유기질비료지원사업  
신청자격, 지원비료의 종류 등은  
어떻게 되나요?

## 신청자격

- ▶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
  - ※ 친환경인증농가, 친환경단지농가,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 순위

## 지원대상(비료의 종류)

- ▶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
- ▶ 부산물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, 퇴비

## 지원 혜택

- ▶ 포당 유기질 1,400원, 퇴비 1등급 1,200원, 2등급 1,000원, 3등급 7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, 추가로 지방비가 600원(1포)을 지원하므로 저렴하게 사용 가능

## 지원 물량

- ▶ 유기질비료 농가공급량은 과다시비 방지를 위해 지역별 토양특성,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농림사업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
  - ※ 유기질비료에는 비료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조절하여야 함.